“북구민의 건강파트너!
소통하는 북구체육회!”

2026. 7.

2026년 도
제 15차 이 사 회
서 면 결 의 결 과

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

제15회 이사회 서면결의 결과보고

정관 제22조(서면결의)에 의거하여 개최한 **제15차 이사회 서면결의**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

관련근거

○ 정관 제22조(서면결의)

회의개요

○ 일　　시: 2026. 7. 23.(목)~ 24(금) / 2일간

○ 참석인원: 재적이사 29명 중 22명

회의결과

구분	안　　건		결　과	비고
의결사항	제1호	북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	제2호	북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	제3호	북구체육회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	제4호	북구체육회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	제5호	북구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	제6호	북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(인정단체)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	**원안의결**	

관련근거

※ 정관 제18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)

제18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.

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
4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상임부회장, 사무국장의 임면동의
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8. 준회원단체·인정단체의 가입승인, 강등 및 제명
9. 그 밖의 중요사항

※ 정관 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